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1-12-27

수 원 고 등 법 원

제 1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	2021누1095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원고, 피항소인	재단법인 A
	소송대리인 법무법인 [redacted]
	담당변호사 [redacted]
피고, 항소인	[redacted]시장
제 1 심 판 결	[redacted]지방법원 2021. 1. 21. 선고 2020구합63888 판결
변 론 종 결	2021. 9. 17.
판 결 선 고	2021. 10. 22.

주 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1. 청구취지

피고가 2019. 7. 26.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08,154,390원, 지방교육세 9,185,030

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1-12-27

원, 농어촌특별세 4,601,07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.

2. 항소취지

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 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,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,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

○ 제1심 판결 본문 제2, 3, 4항을 각 제3, 4, 5항으로 고치고, 제3쪽 제12행과 제13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.

『2. 원고 주장의 요지

원고는, 여름과 겨울에 개최되는 수련회 등 종교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부족한 공간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였고, 실제로 여름과 겨울에 개최되는 수련회 등 각종 행사에 사용하여 종교 목적에 맞게 직접 사용하였으므로, 이 사건 부동산을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.』

○ 제1심 판결 제7쪽 제7행과 제8행의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.

『이에 대하여 피고는,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냉난방 시설을 갖추지 않았고 수도를 연결하지도 않는 등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관리 상태나 사용 빈도를 볼 때, 이 사

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1-12-27

건 각 부동산을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.

그러나 냉난방 시설을 갖추거나 수도를 연결하는 것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종교 행사 용도에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불가결한 요소라고 할 수 없는 점,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비록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일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설교 단상과 예배의자 등 종교행사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여름과 겨울에 반복적으로 수련회 장소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점,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종교 사업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피고가 증명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, 단지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종교 사업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.』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.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[redacted]

판사 [redacted]

판사 [redacted]